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 적기 투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가산금 일할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수요기업 처분제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41조제7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첨단기술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적기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가산금 일할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규정(안 제3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386호, 2023. 4. 18. 공포, 2023.10.19.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채납 가산금의 일할 산정 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납부지연 가산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준용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3. 7. ~ 2023.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35조제5항”을 각각 “법 제35조 제6항”으로 한다.

-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제41조제7항 중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 생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의

녹색기술의 연구, 사용, 지원 등(운송, 저장, 연료 공급 기타 그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위탁 등) <신 설>	제32조(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위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의한 이자율을 말한다.
① 법 제3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항----- ----- ----- ----- ----- ----- -----.
② 법 제35조제5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6항----- ----- ----- ----- ----- ----- -----.
제41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제41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
①~⑥ 생략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⑦ 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 생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의 녹색기술의 연구, 사용, 지원 등(운송, 저장, 연료 공급 기타 그에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76